

##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9. 11. 11.(수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  
이경자 부위원장  
이병기 위 원  
형태근 위 원 (4인)
4. 불참위원 : 송도균 위 원 (1인)
5. 회의내용
  - 가. 성원보고
  - 나. 국민의례
  - 다. 개회선언
 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**바. 의결사항**

**1)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- 현대홈쇼핑 등 3개사 - (2009-54-240)**

○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2010년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(주)현대홈쇼핑, (주)우리홈쇼핑(채널명 : 롯데홈쇼핑), (주)농수산홈쇼핑 3개사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(심사방향) 승인기간 동안의 운영실적, 승인조건 이행 여부, 향후 사업계획을 평가

구 분	2007년 재승인시 승인조건
우리홈쇼핑 (채널명 : 롯데홈쇼핑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롯데쇼핑(주)의 '주우리홈쇼핑 경영계획'에서 제시한 다음의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보호 및 상생 방안</li> <li>- 고객보호 방안</li> <li>- 방송의 공적 책임, 공익성 확보 방안</li> </ul> </li> </ul>
농수산홈쇼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의 편성비율을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% 이상으로 유지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'의 범위는 생식품, 가공식품, 건강/다이어트/미용식품, 공예/특산품 및 천연소재상품, 원예상품과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관련 상품에 한함</li> </ul> </li> </ul>

- (심사위원회 구성방안)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, 총 9인으로 구성

구 분	전 문 분 야	비 고
심사위원장	방 송 통 신 위 원	
심사위원	방 송 분 야 (2인)	신문방송 관련학과 교수
	방송평가위원 (1인)	방송평가위원회 위원
	법 률 분 야 (1인)	변호사 또는 법학과 교수
	경 영 분 야 (1인)	경영·경제 관련학과 교수
	회 계 분 야 (1인)	공인회계사
	시청자·소비자 단체 (1인)	시청자단체·소비자단체 종사자
	방송통신위원회 사무조직 (1인)	담 당 과 장

- (추진일정) '09. 11. ~ '10. 4.

일 정	추 진 계 획
'09년 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승인 신청 공지</li> <li>○ 재승인 신청서 접수 (~11.27)</li> </ul>
'09년 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청자 의견수렴</li> <li>○ 관계부처 의견조회(필요시)</li> <li>○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</li> </ul>
'10년 1~4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</li> <li>○ 재승인 의결</li> </ul>

**2) SK텔레콤(주)와 (주)한국케이بل텔레콤 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(2009-54-241)**

-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SK텔레콤(주)(SKT)이 제출한 SK텔레콤(주)와 (주)한국케이بل텔레콤(KCT) 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구 분		심 사 기 준	검토결과
구비서류 [형식심사]		○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정한 구비서류 5개 항목	<b>구비완료</b> (신규대비표는 신규 협정이므로 제외)
상호 접속	접속망 구성	○ 이동중계교환기,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등의 접속 허용 (상호접속기준 제8조)	<b>부합</b> (SKT의 보라매 교환국사 이동중계교환기에 접속)
		○ 접속용량 등은 사업자 간 협의로 정함 (상호접속기준 제9조)	<b>부합</b> (양사 간 협의로 E1급 2회선 접속)
기준 [기준 적합성 심사]	접속료 산정	○ 이동전화망의 이용대가는 상호접속기준에 따라야 함 (상호접속기준 제7조)	<b>부합</b> (상호접속기준에 따라 방통위가 결정·통보한 접속요율 적용)
		○ 접속통화료는 전화망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 (상호접속기준 제21조)	<b>부합</b> (접속이용사업자인 KCT가 접속제공사업자인 SKT에 접속통화료 지불)
부대 서비스비		○ 통신품질조사, 과금 및 징수 등에 대한 부대서비스 제공 가능 (상호접속기준 제33조)	<b>부합</b> (국제전화통화료에 대한 과금은 KCT가 SKT에 위탁)

**3) 국민관심행사 고시에 관한 건(2009-54-242)**

-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(직무대리)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고시(안)을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- **(대상 행사)** 연구 용역 및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민적 관심도, 국가 대표성, 방송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, ① 아시안게임, ② 야구 WBC (월드베이스볼클래식), ③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 (월드컵 축구 예선 포함)로 지정
- **(시청수단 확보범위)**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, 가능한 다수의 시청자가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전체 가구 수의 75% 이상으로 함

- (기타사항) 관련 고시를 일원화하기 위해 90%이상 시청수단 확보 국민관심행사 고시 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-107호, 2008. 8. 7)와 통합 고시

※ 고시 제2008-107호는 폐지

#### 4) 『2009년 방송평가』 결과에 관한 건(2009-54-243)

- o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(직무대리)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『2009년 방송평가』 결과를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
- o 주요 내용
  - 『2009년 방송평가』는 '08. 1. 1~12. 31을 평가기간으로 하여, 총 163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 내용 및 편성과 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됨
  - 평가에서는 2007년 12월 개정·공표된 『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』과 『평가척도 세부기준』이 적용됨
  - 평가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

### 사. 보고사항

#### 1) 『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』 개정(안)에 관한 사항

- o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(직무대리)으로부터 『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』 개정(안)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, 내용을 보완하여 차후에 다시 보고받기로 함

### 아. 기 타

#### 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기로 함

### 6. 폐 회 (11:50)